

●법무부령 제1077호

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(률)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05월 14일

법무부장관 인

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

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바목 중 “문화재” 를 “국가유산” 으로 한다.

제71조제1항 전단 중 “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「형사소송법」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” 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보관증의 징구등” 을 “보관증을 제출받는 절차 등” 으로 한다.

별표 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국가유산류	국가유산청에 인계	
----------	-----------	--

별지 제31호서식 및 제3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4호바목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○○○○검찰청

우편번호/ 주소 /전화 /전송
수신자 성명 귀하(우. 주소)

제 목 압수물건 환부통지서

1. 귀하로부터 압수했던 아래 목록의 물건을 돌려드리고자 하니 년 월 일 시까지 우리 청 ○○과(☎○○○○-○○○○, 담당 : ○○○)로 오셔서 물건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

2. 압수물건(압 제 호)

증 제 번 호	물 건	수 량
제 호		
제 호		
제 호		
제 호		
제 호		

3. 오실 때에는 반드시 이 통지서,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, 대리인이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 및 귀하의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(귀하가 날인한 경우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(귀하가 서명한 경우)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만약 위 압수물건이 필요하지 않거나, 돌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래 **소유권포기서**에 내용을 작성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이 통지서를 우리 청으로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발 신 명 의

○○○검사장 [인]

소유권포기서

위 목록에 기재된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 :

주민등록번호 :

성 명 : (인)

연 락 처 :()

○○○○검찰청

우편번호/ 주소 /전화 /전송
수신자 귀하(우. 주소)

제 목 압수금 환부통지서

1. 우리 청에 보관 중인 압수금 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부하고자 하니 . . .까지 이 통지서,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우리 청 ○○과로 오셔서 압수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압제번호	증제번호	금액	성명	환부사유

2. 압수금을 귀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을 원하실 때에는 아래 무통장입금청구서의 각 기재란에 해당 내용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요청하신 내용대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.

3. 대리인이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청구서 및 귀하의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(귀하가 날인한 경우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(귀하가 서명한 경우)을 함께 동봉해 우편으로 보내주셔야만 송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4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○○과 압수담당 ○○○(전화 ○○○-○○○-○○○○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○검찰청 ○○지청장 [인]

----- 자르는 선 -----
년 압제 호(증 호)

- 무통장입금청구서 -

예 금 주 성 명	거래은행 및 계좌번호	금 액

본인에 대한 환부압수금을 위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청구인 (인)
연락처(- -)

○○검찰청 ○○지청 귀하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‘문화재’ 용어를 ‘유산’ 으로, 통칭은 ‘국가유산’ 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이 제정(법률 제19409호, 2023. 5. 16. 공포, 2024. 5. 17. 시행)된 것에 맞추어 ‘문화재’ 를 ‘국가유산’ 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압수물건이나 압수금을 환부받으려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